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1)]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hjlee@hri.co.kr

Ⅰ. 개관

김정은 시기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경제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월 22일에 개최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부터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지방공업 발전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 특히 2013년에는 전국 단위의 경공업 대회를 개최하여 생산품의 공급 부족과 낮은 품질, 원료·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노동자의 '패배주의', '수입병'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집권 초기부터 경공업 발전에 대한 주문을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합하여 체제 안정화에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시, 군은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라고 언급하면서 "시, 군을 거점으로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3)] 이와 함께 시, 군 강화의 목표는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 군들에서는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수립하여 연차별로 실행할 것을

1) 본고는 이해정·강성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분석」, 『체어퍼슨 노트』, 22-06, 2022(비공개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조선중앙통신』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2012. 1. 22),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2년 1월호, p.37에서 재인용.
3)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2021. 1. 9)을 참고하라.

주문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1년 3월에 북한 정권 최초로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균형적 동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인 시·군 강화의 초석을 다지고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추동"할 것을 강조하였다.[4]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강습회의 개강사, 결론, 폐강사 등을 직접 수행하며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강습회에서 '전국의 균형적 동시발전'을 화두로 노동당 정책의 말단 지도·집행 단위로서 시·군당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혁신 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평안북도 창성군을 지방공업의 본보기 군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09호에 따라 평안북도 창성군을 모범지방공업군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황해북도 연탄군이, 2016년 4월에는 자강도 우시군이, 2016년 5월에는 평안남도 회창군이 모범지방공업군으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지방공업 공장들을 개건하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방공업 총생산액의 증대 등 성과를 창출한 지역들이다.[5] 또한 지방예산 수입을 늘리는 등 시를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모범을 보인 시 단위는 지방예산 제모범시로 지정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

김정은 시기 북한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현대화와 규격화를 강조하고,[7] 시, 군 자체로 외화 벌이를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8] 전력문제 역시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양열, 수력, 풍력, 폐열, 미생물 활용 등 다양한 자연 에너지를

〈표 1〉 김정은 시대 주요 도시·농촌 개발사업 및 상징성

	상징성
삼지연시	'산간문화도시 및 농촌진흥의 표준', '이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본보기 온천관광문화지구'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
창성군	'지방공업의 본보기 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우리식의 해안관광도시'로 건설(예정)
금강산관광지구	'우리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건설(예정)
평양보통강다락식주택구	'도시주택건설의 본보기'로 건설
검덕지구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도시, 광산도시'로 건설(예정)

자료: 강성현·이해정,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발전적 재개 방안」, 『체어퍼슨 노트』 22-02, 2022. 비공개 보고서, p.9.

4)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1년 3월호, pp.5~10.
5) 유영구,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파주: 경인문화사, 2021, p.298; p.598.
6) 2017년 4월 평안남도 평성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69호에 따라 지방예산제모범시로 지정되었다(위의 책, p.299).
7) 리성곤, 「지방공업제품규격화는 질제고를 위한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3호, 2012, pp.26~28, 윤세라,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2021, pp.27~28에서 재인용.
8) 전충혁,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 『경제연구』, 4호, 2013, p.40, 위의 글, p.28에서 재인용.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9] 북한은 지방경제 분권화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브랜드화), 지방예산제의 강화(수요 충족),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질적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10] 2022년 6월에는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북 강원도 김화군에 식료품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진행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11] 지방경제 발전과 상업봉사체계 복원을 위해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시·군 단위의 정책방향은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중소형 수력발전소 6개 이상 건설, 지방산업 공장들의 원료·자재의 국산화 및 조건 마련(개건확장, 현대화), 시·군 단위 양묘장 건설, 양로원, 양생원 등 복지 시스템 구축, 식품가공공장 건설, 경공업 제품 개발 등 지역 브랜드 생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21년 6월 UN에 제출한 자발적국별리뷰(VNR)에서 목표 10번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2] 산업, 농업, 공공보건, 교육 및 인프라 분야에서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하나, 북한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 따라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시와 군을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 10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은 도농격차 감소를 위해 국가는 농촌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의 공장과 기업소는 농촌의 협동농장과 작업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고, 환경·자재·연료 공급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생산 증대를 통해 농촌 인구의 생활수준과 농촌경제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Ⅱ. 관련 법제 정비 동향

김정은 시기 북한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 「지방예산법」, 2013년 「경제개발구법」, 2021년 「시군발전법」 등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였다. 이러한 신규 법률의 제정은

9) 김옥, 「전력문제를 전망성있게 해결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4호, 2019, pp.23~25; 리진수, 「현시기 전력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3호, 2019, pp.10~11, 장성호,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것은 전력문제 해결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3호, 2014, pp.25~27, 위의 글, p.28에서 재인용.

10) 고인훈,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경제연구』, 176호, 2017, pp.20~21,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KINU 연구총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212에서 재인용.

11) 『노동신문』,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실체: 개건현대화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2022. 6. 23),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2년 6월호, p.22에서 재인용.

1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epare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6, p.35.

〈표 2〉 북한의 주요 지방분권화 조치

	도입 시기	주요 내용
지방예산제	1973년	- 1973년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권한 부여(형식적 분권화), 지방에 대한 국가보조금 폐지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지방별 중앙납부금 외 예산계획권 부여(실질적 분권화) - 2012년 「지방예산법」 제정: 지방예산제의 법제화
지방무역	1970년대 후반	- 1970년대 후반 지방 단위 무역 부분적 허용 -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 도(道)에 무역 권한 위임 - 1997년 「무역법」 제정: 무역 주체로 '기관' 규정
인민소비품	1984년	- 1984년 도입 후 전국적인 대중운동 전개 지방 소재 중앙공업공장에서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해당 지역 유통 허용(기존 생산물은 전국적 차원에서 유통)
경제개발구	2013년	-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 도(道) 단위 지방급경제개발구 창설 허용

자료: 이해정・강성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분석」, 『체어퍼슨 노트』, 2022(비공개 보고서), p.4.

지방 행정기관 및 기업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시기 이전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고, 1970년대 말부터 지방무역을 허용하는 한편, 1984년에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분권화 관련 제도화를 진전시킨 바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하에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는 「지방예산법」을 제정하여 1973년에 지방예산제가 도입된지 40여 년 만에 이를 법제화하였다.[13] 동법 제24조에서 지방예산 수입과 지출의 보장을 바로하는 것이 지방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와 자재, 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공업공장들은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액 비중을 60%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적고 있다. 한편, 제40조에서는 각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국칭호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의 규범적 기준으로서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법률이다.[14]

13)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p.456~462.
14) 이해정 외,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경제주평』, 18-34, 통권 809호, p.5.

동법 제3조에서 경제개발구를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1조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경제개발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에서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조직, 경제개발구 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 사업 관련 국가관리문서의 작성과 시달,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 보장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였다. 총 5개 장 98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법에서는 모든 시·군을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지방도시와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하는 것을 시·군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15] 제1장은 시·군의 위치와 역할, 시·군 발전의 기본원칙 등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례 조치를 취해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망 목표와 계획은 시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전망 목표이며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인민회의를 통한 인민경제계획 작성, 실행대책 수립, 지방예산 편성 등 기존 체계 내에서 시·군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3장은 지방공업, 농촌경리, 국토환경보호·도시경영, 지방건설·운수, 상업·지방무역 등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를 각각 다루고 있으며, 모범지방공업군칭호쟁취운동, 지방예산제모범군정호운동, 모범삼림군칭호쟁취운동, 국토환경보호모범군 등 도·시·군 간 경쟁과 부문 간 경쟁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 제4장에서 모범교육군 칭호 쟁취운동, 모범체육군 칭호 쟁취운동 등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5장은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 인민위원회 등 해당 기관들이 시·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군 발전법」은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의 부문에서 지방경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자 신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2021년 11월에는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17]의 대상을 기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 작업반 단위에서 시·군·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였다.[18] 이에

15)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1년 11월호, p.15.
16) LH 토지주택연구원, 『2021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2, pp.17~19.
17)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1975년 11월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한 운동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기술개조운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5, p.75).
18)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1년 11월호, pp.8~9.

〈표 3〉 북한 시군발전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제1장	기본 원칙		사명: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 추동, 사회주의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제1조) 시군의 위치와 역할: 당 정책의 말단 집행 단위, 농촌경리·지방경제 지역적 거점, 나라 전반의 발전을 떠받드는 보루(제2조) 기본 원칙: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걸어나가 정치·경제·문화 부문의 발전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제3조)
제2장	시군 경제발전전망 목표와 계획		시군인민위원회, 시군급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망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시군인민회의는 이를 승인(제8조) 시군인민위원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제9조)
제3장	지방 경제 발전	제1절 지방 공업	모범지방공업군칭호쟁취운동: 간장, 된장, 먹는 기름, 학습장, 빨랫비누 등을 우선 생산 보장, 어린이영양식품, 일용잡화, 건재상품 생산(제13조) 기초식품공장, 식료공장 우선 발전(제15조) 지방공업공장 현대화,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무인화(제16조) 강하천중소발전소 건설, 풍력·조수력·지열·태양열 자연 에너지 이용 범위 확대(제17·18조)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 및 폐기폐설물 재자원화(제23조·24조) 지방예산제모범군정호운동(제29조)
		제2절 농촌 경리	주체농업에 따라 영농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와 물질기술적 보장을 통해 농업생산력 제고(제30조) 선진영농기술과 집약적영농방법 추진,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알곡 및 축산물생산계획 등 농업생산목표 수행(제31조)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 증산, 농업 지도 강화(제32조) 농촌경리의 수리화·전기화·기계화·화학화, 농업의 공업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 추진(제34조) 알곡을 정보당 10t 이상 내기 운동(제35조)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제36조)
		제3절 국토 환경 보호/ 도시 경영	국토환경보호모범군: 산림 조성, 도로 건설, 하천 정리, 환경보호(제54조)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 양묘장 조성, 나무모생산 과학화·공업화·집약화(제47조) 림농복합경영방법 적극 도입, 적지적수와 적지적작 원칙 추진(제48조) 공해요소 측정, 환경보고기준 준수(제51조) 모범원림군칭호쟁취운동: 지역의 수림화·원림화·공원화 실현(제53조)
		제4절 지방 건설/ 지방 운수	국가의 지방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지방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제56조) 건설의 전문화, 도시건설총계획 작성 및 연차별 추진, 농촌마을 현대적 건설 전망계획 수립 및 연차별 수행(제57·58조) 건재의 국산화, 건재생산기지 조성(제59조) 자동차와 배에 의한 여객수송 및 짐수송 개선(제60조) 농촌버스화 실현, 리에까지 버스운행 정상화(제61조)
		제5절 상업/ 지방 무역	국가 상업망배치원칙에 기초하여 품질 기술적 토대 구축, 상업경영 활동의 정보화·과학화 추진(제62조) 시군인민위원회는 모든 무역활동을 도무역관리기관을 통해 진행(제66조)
제4장	지방문화 발전		교육, 과학, 보건, 체육 등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 발전(제67조)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제68조)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제73·79조) 붉은기동인민반칭호쟁취운동,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제84조)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제85조)
제5장	시군지도 및 국가지원 강화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시군의 자체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계획적으로 추진(제86조) 내각과 출판보도기관은 모범적인 시군에 대한 소개선전사업 강화, 경쟁 열풍이 넘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추진(제89조)

자료: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p.127~141.

대해 “모든 부문·단위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고 강조하여 시군발전법 제정 이후 시군의 역할 강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국의 200여 개의 시군들을 포함한 모든 부문,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잠재력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나간다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대업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시사점과 과제

김정은 시기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전 시기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군의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이나 해외자본 등 외부자원 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은 민생 개선 및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외부자원 투입 없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기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에 제약이 적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19]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교류협력 경험을 보유한 북측의 개성과 남측의 경기도, 북측 금강산 지역과 남측 강원도 간 단계적 협력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개성과 경기도 간에는 개풍양묘장 주요 양묘장 현대화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협력 추진 등을 고민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강원도 간에 금강산 내 영농장(금천리, 온정리, 삼일포 등), 양돈장(금천리, 삼일포, 성북리 등), 양묘장 등에서 자원순환형 농축산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팜 조성 시범 사업 추진 등도 고려할 수 있다.

19)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은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성현・이해정,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발전적 재개 방안」, 『체어퍼슨 노트』, 22-02, 비공개보고서, 2022.

고인훈,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경제연구』, 176호, 2017.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김옥, 「전력문제를 전망성있게 해결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4호, 2019.

리성곤, 「지방공업제품규격화는 질제고를 위한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3호, 2012.

리진수, 「현시기 전력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3호, 2019.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5.

유영구,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파주: 경인문화사, 2021.

윤세라,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2021.

이해정・강성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분석」, 『체어퍼슨 노트』, 22-06, 비공개 보고서, 2022.

이해정 외,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경제주평』, 18-34, 통권 809호, 2018.

장성호,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것은 전력문제 해결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3호, 2014.

전충혁,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 『경제연구』, 4호, 2013.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KINU 연구총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각호.

LH 토지주택연구원, 『2021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2.

『로동신문』“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2021. 1. 9)

『로동신문』,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실체: 개건현대화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2022. 6. 23),

『조선중앙통신』“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2012. 1. 2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epare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6.